

동아대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자유·진리·정의의 교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자유로이 탐구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 고도 산업 사회 및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과 정의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 및 대학원) ① 본 대학교에는 단과대학으로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공과대학, 디자인환경대학, 예술체육대학, 건강과학대학, 의과대학, 국제대학, 기초교양대학, 융합대학을 둔다. 단과대학에 소속하지 않는 학부(이하 “독립학부”라 한다)로 컴퓨터·AI공학부, 석당인재학부, 간호학부를 둔다.

② 본 대학교에는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국제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특수대학원으로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을 둔다.

③ 대학원의 학칙은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2(공유대학의 설치, 운영 등) ① 국내·외 타 대학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대학을 둘 수 있다.

② 공유대학 내 융합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유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편성 및 정원) ① 본 대학교 각 대학의 학부(과)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2개 이상의 전공이 편성된 학부(과)의 전공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의1(정원의 전담학과 설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만 해당), 제7호, 제12의2호, 제14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담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부속시설) ① 본 대학교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 규정」으로 정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술정보원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대학[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제외]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되, 융합전공 I 이수자는 4년으로 한다.

3. 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구분한다.
4.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 운영(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하는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5년[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는 4.5년]으로 한다.
- ② 조기졸업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각 대학[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제외]은 6학기 또는 7학기
 2.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는 8학기 또는 9학기(다만, 융합전공 I 이수자의 경우 6학기 또는 7학기)
- ③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의예과와 의학과는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하며,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는 제적된다.

제3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6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학부, 전공) 또는 학년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
- ② 전학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계절학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절학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의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개별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③ 법정 공휴일(임시휴일 포함) 및 대체휴무일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일수에 대하여 보강일을 지정하여 학기 개시일 전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휴가
 2. 동기휴가
 3. 개교기념일(11월 1일)
 4. 일요일
 5. 국정공휴일
-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 ③ 휴업일 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4장 입학 및 전부(과)

제9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입학자격)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11조(모집단위와 모집인원) ① 입학 모집단위는 학부(과) 및 전공별로 한다.

② 입학 모집인원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입학정원내로 하되 전형유형별로 모집인원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해당 연도의 구체적인 학부(과)별 정원은 모집요강에 공고한다.

제12조(편입학) ① 제3학년(의학과는 1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른 대학에서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 또는 법령상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부(과)별 제1학년과 제2학년의 제적자 수에 한하여 소정의 전형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에게는 제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본 대학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협약체결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연계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계교육 학사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④ 편입학 할 수 있는 학년별 인원은 당해연도 교육부 「대학 편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제13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총 정원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학과, 의과대학 및 간호학부는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② 제5조제3항에 의거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한 학기가 경과한 후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제2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 재입학 허가 시 제적 당시의 학적을 유지한다. 다만, 재입학 이후의 학사경고, 유급은 재입학 이전 발생분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입학지원 서류) ① 각 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입시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증명 서류
2. 성적증명서
3. 기타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1.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한다.

2.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본 대학교가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한다.

3.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은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의 범위 및 모집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입학전형자료는 지원자의 출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중 필요한 성적 및 자료와 지원자가 제출한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각 입학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총장이 한다.

제17조(입학등록 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이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을 하였거나 지원자격 미달자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 (삭제 2009. 3. 1)

제19조(전부(과)) ① 전부(과)는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2,3,4학년 과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의예과·의학과는 전부(과)를 불허하고, 간호학과는 전출은 허가하나 전입은 불허하며, 교육학과는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전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부(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전부(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소속변경) 대학 학생정원조정으로 인해 학생모집이 중단되거나 통폐합된 학과에 소속된 자 중에 희망자는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속변경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등록

제20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등록에 대해서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지침」으로 따로 정하고, 정학생의 등록에 대해서는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의

등록은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수강 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6장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2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 8학기(4년)[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는 통산 10학기(5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의과대학의 의예과와 의학과의 휴학기간은 「의과대학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병역, 창업 및 육아휴학) ① 병역의무이행, 창업 및 육아(임신·출산 포함)로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병역, 창업 및 육아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휴학·복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복학) 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복학할 수 있다.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6조(자퇴)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자가 복학해야 할 해당학기의 복학기간 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입학전형 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위반자로 교육부로부터 입학취소통보를 받은 자
4. 재학 중 학사경고 통산 3회 또는 유급 2회인 자

제7장 교과 및 이수

제28조(교과구분) 각 대학의 교과는 교양교과, 전공교과, 자유선택교과로 구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 ①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 등에 의한 원격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수업시간 및 기타 강의 개설(분반 및 폐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의시간표 편성 지침」으로 정한다.

제31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취득학점) ① 각 대학의 매학기 취득학점은 17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취득학점은 19학점(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및 간호학부 간호학과는 21학점,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석당인재학부는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수강을 원하는 교과목의 학점단위로 인해 최대취득학점보다 부족하게 수강신청을 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학점이 2학점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점만큼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 시까지 24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자 및 조기졸업지원자는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 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다.

④ 복수·부·연계·자기설계연계전공·교양학사학위과정·융합전공Ⅱ와 전공교직과정을 동시 이수하는 자와 복수·연계전공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일 경우 3학년부터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 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다.

⑤ 공학교육심화 프로그램의 편입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학기 최대 신청학점 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있다.

⑥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처장이 승인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대 취득학점을 매학기 2학점 이내로 초과할 수 있다.

제33조(수료학점) ① 각 대학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대상 학년	각 대학 [예의 적용 대상은 별도 명시]	간호학부 간호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경영대학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공과대학 스마트제조공학과
1학년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2학년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3학년	98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4학년	1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128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5학년				160학점 이상	

② 의과대학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6학점 이상으로 하고 수료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졸업학점) 졸업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대학(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의과대학, 경영대학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간호학부, 공과대학 스마트제조공학과 제외)의 졸업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2. (삭제 2009. 3. 1)

3. 간호학부 간호학과 졸업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4.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학점은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5. 경영대학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공과대학 스마트제조공학과 졸업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6. 융합전공 I 이수자의 졸업학점은 「융합전공 이수 규정」을 따른다.

제35조(조기졸업)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과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전 학년의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으로 과목 평점이 3.0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시킬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학점 및 성적인정) ① 전부(과)생 및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심사하여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② 편입학생은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심사하여 졸업학점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입학생 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37조(대학원 및 타 대학 등의 학점인정) ① 재학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되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관계가 있는 국내·외의 다른 대학(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국내교류학생에 관한 규정」 및 「국외교류학생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09. 3. 1)

제38조(다전공 및 융합전공) ① 학생은 소속 학부(과) 전공 이외에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 연계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교양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연계전공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자기설계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⑤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부전공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⑥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융합전공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⑦ 교양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양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⑧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 연계전공, 융합전공, 교양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위를 수여하고,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제38조의2(소단위 교육과정)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소단위 교육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의3(학·석사 연계과정)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의4(학군사관후보생과정) 본 대학교에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제117 학생군사교육단을 두며, 군사교육단의 조직과 교과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7학생군사 교육단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시험·출결·성적 및 졸업논문

제39조(시험) ① 학기마다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필요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교과목 담당 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40조(출결) ① 수업실시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사항은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공결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예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생출결관리, 학점 및 성적관리 기록물은 5년간 보관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출결 관리 지침」 및 「학점 및 성적관리 기록물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시험, 출결, 성적평가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제42조(성적등급) 학업성적은 등급별로 분류하고 평점평균 4.5 만점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업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취득학점인정) D등급 이상과 P등급의 학업성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을 이중 취득한 경우에는 교과구분 및 교과목번호가 다르더라도 높은 성적의 교과목 학점을 인정하며 낮은 성적의 교과목은 삭제 처리한다.

제43조의2(특별학점의 인정) 공인된 어학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특별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사회봉사학점의 인정) 재학 중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4(고교-대학 연계학점의 인정)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고교-대학 연계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본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5(현장실습 학점의 인정) 재학 중 국내·외 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의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6(대학과목선이수제 학점의 인정)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과목 선이수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7(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인정) ①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 또는 방송·통신·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격수업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교육적 경험을 사회봉사, 인성, 리더십 등 관련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위 각 항의 인정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인정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43조의8(학교생활기록부위주전형 예비입학생 학점의 인정) 학교생활기록부위주전형 예비입학생이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입학한 경우 그 취득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위주전형 예비입학생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9(원격수업 학점의 인정) 재학 중 방송·통신 등에 의한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10(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학점의 인정) 재학 중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11(국가대표선수 이동수업학점의 인정) 재학 중 국가대표로 발탁된 경우, 이동수업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국가대표선수 이동수업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44조(재수강) 동일교과목과 유사 및 대체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재수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와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시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46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이 소정의 평점평균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한다.

②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는 「의과대학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유급) ①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 중에서 학업성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② 유급에 관한 사항은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는 「의과대학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부(과)에 따라서는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공인된 기관의 어학시험 및 자격증, 팀프로젝트 결과보고서로 이에 대체할 수 있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자 및 졸업예정학기 장기현장실습 이수자에게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졸업논문이 심사에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수료 후 10년 내에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10년을 초과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후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졸업논문이 심사에 통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졸업논문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졸업논문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학점 및 졸업논문 취소) 학점이나 졸업논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거나 심사에 통과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9장 졸업 및 학위

제50조(졸업인정 및 학위수여) ① 최소 수업연한, 졸업학점, 소정의 성적, 졸업논문 등의 자격을 갖춘 자(해당학기 졸업일 기준 정학 이상의 징계 중인 자는 제외)에게 졸업을 인정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학위수여 종류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칙 제2조의2에 의한 공유대학의 학위수여 종류는 따로 정한다.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한 학위수여는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본 대학교에서 84학점(다만, 학사학위를 가진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 본 대학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칙 제50조의 졸업인정 및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지침」으로 정한다.

제50조의3(복수학위)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외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졸업취소) 졸업생으로서 제49조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한다.

제10장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제52조(위탁생의 수학허가)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위탁과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자에게는 정원 외에 위탁생으로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위탁생의 자격상실)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떠났을 때에는 수학을 할 수 없다.

제54조(외국인학생의 입학허가) 외국인이 제4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할 때에는 학력을 평가한 후 정원 외에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입학할 수 있다.

제55조(외국인학생의 과정이수)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6조(외국인학생의 편입학)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대학 편입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정규 학생으로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7조(학칙의 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특별학생에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11장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운영

제57조의2(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의한 학과 및 과정의 설치·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제58조(시간제 등록생) ① 열린교육 사회체제와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선발하며, 본 대학교의 재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반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별도 반을 둘 수 있다.

③ 시간제 등록생의 통합반과 별도 반 모집인원은 각각 해당 연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교육학과,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간호학과는 모집하지 아니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본 학칙을 준용하며, 매학기 등록, 교육과정, 학점인정, 학위수여 및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은 「시간제 등록생 학사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의2(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이상, 전공 60학점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다만, 학사학위를 가진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8학점) 이상인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및 동조 제2항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 18학점 이상인 자.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교육과정 이수 및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 ② 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매학기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록, 교육과정 및 등록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평생교육원 운영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 ① 제58조의2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제50조제2항에 의한 학위종별 및 전공에 따른다.
- ③ 학위취득이 인정된 자에게는 「평생교육원 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 할 수 있다.

제58조의4(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세부사항은 「평생교육원 운영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3장 공개강좌

제59조(공개강좌) ①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산업체근로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모집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총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장 학생활동

제60조(학생활동) ① 학생의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신장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창조적인 학문탐구를 통하여 대학문화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하기 위하여

동아대학교 총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 및 「학생회 간부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생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예술 및 체육·문화 활동
2. 학생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학생 간 교류증진을 위한 활동
4. 방재 및 구난활동
5. 학생자치기구 주관 각종 활동

제61조(학생지도) ① 학사, 교과, 취업 및 진로 등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평생 지도교수제를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생지도교수제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② 교외에서 진행되는 단체행사 운영 시 안전 확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외 단체행사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62조(학생활동 지원) ① 학생활동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활동의 안전과 공익성을 위한 교육 및 특강
2.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
3. 활동 경비의 일부 지원
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학생단체 또는 개인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학생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 등 특별자치기구 주관 학생활동에 관한 관리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총괄한다.
2. 단과대학 학생회 및 동아리(학회) 주관 학생활동에 관한 관리는 소속 단과대학장이 총괄한다.
3. 학부(과) 학생회 및 동아리(학회) 주관 학생활동에 관한 관리는 소속 학부(과)장이 총괄한다.

제62조의2(사회봉사활동 지원)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범위 및 관리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62조와 같다.

제63조(학생활동의 한계)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4조 (삭제 2005. 3. 1)

제15장 포상 및 징계

제65조(포상 및 징계) ①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또는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한 때에는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의 징계처분을 한다.

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장 장학금

제66조(장학금) 본 대학교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장 등록금

제67조(등록금의 납부)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수업료, 입학금 등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등록금의 공시)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등록기간 전에 공시한다.

제69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의 심의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장 직제 및 교원의 교수시간

제70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직제 규정」으로 정한다.

제71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본 대학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1인당 주당 9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보직교원에 대한 책임시간의 일부면제와 교원에 대한 초과 강의시간의 제한은 「강의책임 시간 및 강의로 지급 지침」으로 정한다.

제19장 대학평의위원회

제71조의2(대학평의위원회) 본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동아학숙 정관」 제3절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제71조의3(운영규정) 평의원의 추천방법 및 절차와 대학평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장 교수회

제72조(교수회의 설치)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를 둔다.

제73조(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74조(교수회의 소집)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다만, 관례적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총장이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 처·실장, 학과장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대학별 교수회는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이 소집한다. 총장은 각 대학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75조(교수회의 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사항
3.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제21장 교무위원회

제76조(교무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77조(교무위원회의 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독립학부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건설관리본부장, 비서실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언어교육원장, 석당뮤지엄관장,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소프트웨어혁신센터장으로 한다.

제78조(교무위원회의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제22장 각종 위원회

제79조(각종 위원회) 본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직제 규정」에 정한다.

제23장 학칙개정

제80조(학칙개정 절차) ① 대학의 학칙 개정은 교무처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 총장은 제안된 학칙 개정안을 1주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칙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제24장 자체평가

제80조의2(자체평가) ① 총장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점검·평가한다.

②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체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장 장애학생

제80조의3(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습 및 생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 및 센터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장 학교기업

제81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체 등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명칭, 소재지, 현장실습, 예산 및 회계, 보상금 등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장 시행세칙

제82조(시행세칙) ①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23. 9. 1.)

③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④ 석당인재학부의 학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석당인재학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⑤ (재)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3조, 제34조, 제3조의 단서규정과 제38조의 규정은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한 입학생에게 적용하며, 1977학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따로 정한다.(1977. 12. 22. 학무 1010-1696)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8학년도 이전의 입학생은 구학칙을 적용한다.(1979. 1. 23. 학무 1010-126)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9. 3. 29. 학무 1041. 3-597)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9. 4. 10. 학무 1041. 3-659)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1979. 7. 2. 학무 1041. 3-992)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1980. 3. 4. 학무 1041. 3-463)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1980. 7. 29. 학무 1041. 3-969)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34조, 제35조, 제42조제2항, 제64조의 규정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1980학년도 이전의 입학생에게는 구학칙을 적용한다.(1981. 5. 30. 학무 1041. 3-1048)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1982. 2. 18. 학무 1041. 3-392)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83. 5. 24. 학무 1041. 3-1071)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중 별표1-4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대학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11292호, 1983. 12. 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1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1984. 2. 16. 학무 1041. 3-408)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1984. 8. 29. 학무 1041. 3-1049)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1984. 9. 26. 학무 1041. 3-1497)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2조, 제34조제1항은 198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1985. 3. 2. 학무 25210-476)

부 칙

이 학칙은 198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1985. 3. 28. 학무 25210-566)

부 칙

이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86. 2. 26. 학무 25210-208)

부 칙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87. 2. 28. 학무 25210-392)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12237호 1987. 8. 29)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3조제1항, 제1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학심의회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1987. 8. 29. 학무 25210-1048)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1990학년도(의학과는 199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종전 학칙 제3조제1항 별표의 졸업 정원과 제33조,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44조제3항,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88. 7. 20. 학무 25210-803)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내용 중 법과대학, 공과대학의 최대 취득학점은 198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1989. 3. 31. 학무 25210-484)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6조제2항은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84학년도부터 음악학과로 개편된 음악교육과의 입학자는 당초 입학학과인 음악교육과로 졸업한다.

③(동전)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잠사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천연섬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1990. 2. 7. 학무 25210-208)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1991. 3. 9. 학무 25210-445)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제59조제3항은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1992. 4. 16. 학무 25210-626)

③(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992학년도 이전 음악학과에 기악전공으로 입학하여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동일학년 해당 전공학과로 전과 복학한다.(1992. 8. 7. 학무 25210-988)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이 변경된 전산공학과 입학자 중 199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전산공학과로 졸업하고, 199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컴퓨터공학과로 졸업한다.(1993. 3. 25. 학무 81412-463)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 제2조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제1항,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1993. 3. 31. 학무 81412-527)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1993. 8. 19. 학무 81412-1312)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중 제32조제2항은 199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1994. 4. 12. 학무 81412-656)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인가일: 1994. 10. 21) 및 제3조(인가일: 1995. 9. 5)의 개정 조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1995. 6. 1. 학무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1995. 8. 12. 학무 81510-1054)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46조는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1997. 3. 5. 학무 81412-658 일부변경)

③(대학 및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변경 학칙에 의한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원경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학부제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동 학과가 학부제로 전환된 이후 복학하는 경우 동일학년에 학과가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학과로, 동일학년에 학과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학부로 복학한다.

⑤(재입학에 관한 특례) 1996학년도말 이전에 경제적 사유 등[학무 제81210-958(1993. 7. 8): 제적 학생 재입학확대방안 중 “나. 구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제적된 자에게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4년간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1996. 3. 5. 학무 81210-513)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학부제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 및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1999학년도까지는 동 학과 및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0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로 졸업한다.

1. 인문과학대학의 철학과, 사학과, 국민윤리학과, 고고미술사학과는 인문학부로
2. 인문과학대학의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는 한국어문학부로
3. 인문과학대학의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는 외국어문학부로
4.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는 자연과학부로
5.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부 식품과학전공은 생활과학대학 식품과학부로
6.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천연섬유학과는 생활과학대학 의상섬유학부로
7. 법과대학의 법학과는 법학부로
8. 사회과학대학의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는 사회과학부로

9.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원경제학과는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로
10. 경영대학의 경영학과, 회계학과는 경영학부로
11. 경영대학의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는 관광경영및무역학부로
12. 경영대학의 응용통계학과, 경영정보학과는 경영정보및통계학부로
13.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조경학과는 공과대학 도시조경학부로
14. 공과대학의 환경공학과, 자원공학과는 지구환경공학부로
15. 체육대학의 무용학과는 체육학부로
16. 예술대학의 회화과, 산업미술과, 공예과, 조소과, 섬유미술학과는 미술학부로
17. 예술대학의 음악학과, 기악과는 음악학부로

③(학과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에 자연과학대학 의예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의과대학 의예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별표1(1-3)중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부의 생물자원학 전공을 생물자원학전공과 원예과학전공으로 분리하고, 자원환경학전공을 응용생물학전공으로 변경한다.(1997. 3. 5. 학무 81412-658)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소속변경과 그에 따른 경과조치)

1. '96학년도이전 생명자원과학대학 입학자중 천연섬유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생활과학대학으로, 조경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공과대학으로, 자원경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사회과학대학으로, '95학년도이전 생명자원과학대학 입학자중 축산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생활과학대학으로 학과소속을 변경하며, 변경된 소속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학과소속변경에 따른 축산학과, 천연섬유학과, 자원경제학과, 조경학과의 경우 학칙 제31조, 제32조, 제34조는 소속변경전의 종전학칙을 적용하며, 학칙 제46조의 졸업인정은 축산학과는 농학사로, 천연섬유학과는 이학사로, 자원경제학과는 경제학사로, 조경학과는 공학사로 한다.
- ③(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별표1(1-3)중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을 신소재물리학전공으로 변경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전공)·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학부(과)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1학년도까지는 동 학부

(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2학년도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과)로 졸업한다.

가. 외국어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를 서양어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와 중국·일본학부(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로

나. 사회과학부(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를 정치행정학부(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와 사회언론광고학부(사회학전공, 언론광고학전공)로

다. 건설공학부를 토목·해양공학부(토목학전공, 해양토목공학전공)로, 산업공학과를 산업시스템공학과로 한다.

2. 변경 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학부(전공)로 복학하고,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학생이 원하는 학부로 복학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제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로 통합되는 공과대학의 기계공학과와 산업시스템공학과, 화학공학과와 금속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2학년도까지는 동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3학년도부터는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재료금속·화학공학부로 졸업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및 제50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학부(전공)·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학부(전공)·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전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3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한다.

가. 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한문학전공)는 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전공)로
나. 건축공학과는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로 한다.

2. 이 변경 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배정을 받지 않았거나 학과 명칭변경 및 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학생이 원하는 학부(전공)로 복학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28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학부(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생활과학대학 식품과학부(식품과학전공)를 식품과학부(식품과학(식품학)전공)로 명칭 변경하고 2001학년도 졸업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로 졸업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5조, 제33조, 제34조, 제50조(가정관리학과 학위 제외)는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4년제)은 재적생 졸업 시까지 전공을 존속한다.

③(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1. 2001학년도 이전 공과대학 건축학부에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 학위명은 공학사로 한다.

2. 2002학년도 이후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에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며 학위명은 건축학사로 한다.

④(졸업논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제48조제1항에 의한 공인된 기관의 어학시험을 졸업논문으로 대체하는 것은 1999학년도 경영대학 국제관광통상학부 국제관광학전공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국제관광학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2001학년도 이후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⑤(학위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제50조제2항에 의한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학위명은 '이학사'를 '가정학사'로 변경하되 2001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⑥[학부(전공)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학부(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4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로 졸업한다.

가. 인문학부(철학전공, 사학전공, 국민윤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는 인문학부(철학전공, 사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로,

나. 서양어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는 영어영문학부, 유럽어문학부(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로,

다. 도시조경학부(도시공학전공, 조경학전공)는 도시계획·조경학부(도시계획학전공, 조경학전공)로, 라. 미술학부(회화전공, 공예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조소전공, 섬유미술전공)는 미술학부(회화전공, 공예전공, 조소전공)와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섬유조형디자인전공)로 한다.

2. 이 변경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학부(전공) 명칭에 따라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일학부 또는 변경 학부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부로 복학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전공)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학부(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5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로 졸업한다.

가. 자연과학부(수학전공, 신소재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생물학전공)는 수학·신소재물리학부(수학전공, 신소재물리학전공)와 화학·생명과학부(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로,

나. 생명자원과학부(생물자원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응용생물학전공, 생물공학전공)는 식물생명공학부(식물유전공학전공,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와 응용생명공학부(응용생물 공학전공, 생명공학전공)로,

다.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로,

라.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섬유조형디자인전공)는 조형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섬유조형디자인전공)로 한다.

2. 이 변경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학부(전공) 명칭에 따라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일학부 또는 변경 학부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부로 복학한다.

③[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4년제) 학위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학칙 변경에도 불구하고 2005학년도 이후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4년제)으로 졸업할 경우 학위명은 '공학사'로 한다.

④(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81조제2항의 학칙 변경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 국제관광통상학부 국제관광학전공자(복수전공 신청자 포함)는 '경영대학 국제관광통상학부 국제관광학전공 학사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제50조제2항에 의한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생명

공학부(식물유전공학전공,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 학위명은 '농학사'를 '이학사'로 변경하되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학부(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학부(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한다.

가. 영어영문학부는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주간), 영어전공(야간)]로,

나. 경영정보과학부(경영정보학전공)는 경영정보과학부로,

다.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의 기계공학전공은 기계공학과로, 산업시스템공학전공은 산업경영공학과로,

라. 재료금속·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금속공학전공)는 신소재·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로 한다.

2. 이 변경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학부(전공) 명칭에 따라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일학부(전공)·학과 또는 변경 학부(전공)·학과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부(전공)·학과로 복학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학부(전공)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7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한다.

가. 한국어문학부의 국어국문학전공은 한국어문학부로, 문예창작전공은 문예창작학과로

나. 사회언론광고학부의 사회학전공은 사회·사회복지학부(사회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로, 언론광고학전공은 신문방송학과로,

다. 경제학부의 경제학전공은 경제학과로, 응용경제학전공은 금융학과로,

라. 국제관광통상학부의 관광경영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은 국제관광학부(관광경영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로, 무역학전공은 국제무역학과로,

마. 식물생명공학부의 식물유전공학전공,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은 분자생명공학부(유전공학전공, 환경생명공학전공)로,

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의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은 전자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로, 전기공학전공은 전기공학과로,

사. 기계공학과는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로 한다.

2. 이 변경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할 때 학부(과)·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생이 원하는 유사 학부(과)·전공으로 복학한다.

③(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제50조제2항에 의한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생명공학부 응용생물공학전공 학위명은 '농학사'를 '이학사'로 변경하되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2(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요건)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은 2005학년도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③(인턴십 학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5(인턴십 학점의 인정)에 의한 학점인정은 2004학년도 인턴십 이수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 학부(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1. 대학, 학부(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대학,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8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대학,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한다.

가. 한국어문학부는 국어국문학과로,

나. 식품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 식품과학(식품학)전공]는 식품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로,

다. 의상섬유학부의 섬유공학전공은 섬유산업시스템전공으로,

라. 국제관광학부의 호텔외식경영학전공은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으로,

마. 토목·해양공학부(토목공학전공, 해양토목공학전공)는 토목공학부로,

바. 전자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는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로,

사. 신소재·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는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로,

아. 체육대학은 스포츠과학대학으로, 체육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 사회체육학전공, 무용학전공, 무도학전공)는 스포츠과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 사회체육학전공), 스포츠문화학부(무용예술학전공, 무도학전공, 태권도학전공)로 한다.

2. 이 변경 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학부(전공) 명칭에 따라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일학부(전공)·학과 또는 변경 학부(전공)·학과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부(전공)·학과로 복학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 학부(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1. 부칙 48의 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스포츠과학대학으로 졸업한다.

2. 학부(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9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한다.

가. 인문학부(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는 역사문화학부(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로

나. 중국·일본학부(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는 일어일문학과, 중국학부로

다. 지구환경공학부의 자원공학전공은 에너지·자원공학전공으로

라.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는 기계공학부로

마. 스포츠문화학부의 무도학전공은 무도경찰학전공으로 한다.

3. 이 변경 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학부(전공) 명칭에 따라 전공 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 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일 학부(전공)·학과 또는 변경 학부(전공)·학과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부(전공)·학과로 복학한다.

③(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에 의한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학위명은 '문학사'를 '언론학사'로 변경하되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문화학부 무용예술학전공 학위명은 '체육학사'를 '무용학사'로 변경하되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학부(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0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전공배정을 받은 휴학자가 복학하는 경우, 전공배정 받은 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휴학자가 복학하는 경우, 입학당시의 학부(전공)·학과 또는 복학 당시 학부(전공)·학과로 전공을 배정 받을 수 있다.

1. 역사문화학부의 사학전공은 사학과로, 고고미술사학전공은 고고미술사학과로

2. 수학·신소재물리학부의 수학전공은 수학과로, 신소재물리전공은 신소재물리학과로

3. 화학·생명과학부의 화학전공은 화학과로, 생명과학전공은 생명과학과로

4. 의상섬유학부의 패션디자인전공은 패션디자인학과로, 섬유산업시스템전공은 섬유산업학과로
5. 정치행정학부의 정치외교학전공은 정치외교학과로, 행정학전공은 행정학과로
6. 사회·사회복지학부의 사회학전공은 사회학과로, 사회복지학전공은 사회복지학과로
7. 분자생명공학부의 유전공학전공은 유전학과로, 환경생명공학전공은 분자생명공학과로
8. 응용생명공학부의 응용생물공학전공은 응용생물공학과로, 생명공학전공은 생명공학과로
9. 지구환경공학부의 환경공학전공은 환경공학과로, 에너지·자원공학전공은 에너지·자원공학과로 변경한다.
10. 스포츠과학부의 체육학전공은 체육학과로, 경기지도학전공은 경기지도학과로, 사회체육학전공은 생활체육학과로
11. 스포츠문화학부의 무용예술학전공은 무용학과로, 무도경찰학전공은 무도경찰학과로, 태권도학전공은 태권도학과로
12. 미술학부 조소전공은 조각전공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사회복지학부 사회학전공으로 졸업하는 자의 학위는 '문학사'에서 '사회학사'로, 사회복지학전공으로 졸업하는 자의 학위는 '문학사'에서 '사회복지학사'로,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으로 졸업하는 자의 학위는 '정치학사'에서 '정치외교학사'로 변경하되 2008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과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졸업인증 적용례) 제50조의 졸업인증은 2009학년도 신입학생 및 2011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④(2009학년도 학생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전공)·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전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1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되, 이 학칙 시행 이전 전공배정을 받은 휴학자가 복학하는 경우 전공배정을 받은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하고,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휴학자가 복학하는 경우 입학당시의 학부·학과 또는 복학 당시 학과로 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다.
 1. 인문학부의 철학전공은 철학과로, 윤리문화학전공은 윤리문화학과로
 2.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및 영어전공은 영어영문학과로
 3. 유럽어문학부 독어독문학전공은 독어독문학과로, 불어불문학전공은 프랑스문화학과로
 4. 중국학부는 중어중문학과로
 5.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은 식품영양학과로

6. 경영학부는 경영학과로
7. 국제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 및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은 관광경영학과로
8. 경영정보과학부는 경영정보학과로
9. 토목공학부는 토목공학과로
10. 도시계획·조경학부 도시계획학전공은 도시계획학과로, 조경학전공은 조경학과로
11. 기계공학부는 기계공학과로
12. 무도경찰학과는 경찰무도학과로
13. 미술학부 회화전공은 회화학과로, 공예전공은 공예학과로, 조각전공은 조각학과로
14. 조형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은 산업디자인학과로, 섬유조형디자인전공은 섬유조형디자인학과로
15. 음악학부 음악전공은 음악학과로, 기악전공은 기악학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2010학년도 학생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1. 학부(전공)·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전공)·학과의 재적생은 2012학년도까지는 입학 당시의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되, 복학 등으로 인해 2010학년도 신입생과 졸업 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 가. 생명과학과는 생물·의생명과학과로
 - 나. 가정관리학과는 아동가족학과로
 - 다.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은 건축학과(5년제)로, 건축공학전공은 건축공학과로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 인문과학대학 중국학과와 사회과학대학 국제거래관계학과의 재적생은 각각 이 개정학칙에 의한 국제학부 중국학전공, 국제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2011학년도 학생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경기지도학과의 재적생은 2013학년도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되, 복학 등으로 인해 2011학년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지도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건축·디자인·패션대학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모집을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단과대학 및 학과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학과의 재적생은 2014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의 배정이 필요할 경우 학생이 원하는 세부전공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관광경영학과는 국제관광학과로

2. 섬유조형디자인학과는 섬유미술학과로

3.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학과는 건축·디자인·패션대학 패션디자인학과로

4.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는 건축·디자인·패션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으로

5.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는 건축·디자인·패션대학 산업디자인학과로

② 학과가 통합되는 음악학과 및 기악학과의 재적생은 2014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음악학과의 해당 전공 및 실용음악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③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스포츠과학대학 무용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 (학위명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4(4-2)의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와 공학교육 심화 프로그램 이수자 학위명의 변경은 2007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칙의 개정) 2010년 3월 1일 개정된 동아대학교 학칙 부칙 제2항제1호나목 학과의 재적생은 2012학년도부터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단과대학의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은 2015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자연과학대학 생물·의생명과학과는 생명과학과로
2.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는 인문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로
3.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는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로
4. 생활과학대학 섬유산업학과는 공과대학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로
5. 스포츠과학대학 경찰무도학과는 경찰경호학과로

② 학과가 통합되는 다음 학과의 재적생은 2015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학과의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1. 철학과 및 윤리문화학과는 철학·윤리문화학과로
2. 회화학과 및 조각학과는 미술학과로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칙의 개정) 2013년 3월 1일 개정된 동아대학교 학칙 부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재적생은 2013학년도부터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5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단과대학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은 2017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5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인문과학대학 철학·윤리문화학과는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로
2.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학과로
3.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는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로
4. 생명자원과학대학 의약생명공학과는 건강과학대학 의약생명공학과로
5.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는 디자인환경대학 도시계획공학과로
6. 공과대학 조경학과는 디자인환경대학 조경학과로
7. 건축·디자인·패션대학 건축학과는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로
8. 건축·디자인·패션대학 산업디자인학과는 디자인환경대학 산업디자인학과로
9. 건축·디자인·패션대학 패션디자인학과는 디자인환경대학 패션디자인학과로
10. 예술대학 미술학과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로
11. 예술대학 음악학과는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로
12.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지도학과 및 생활체육학과는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로
13. 스포츠과학대학 경찰경호학과, 태권도학과는 예술체육대학 태권도경호학과로

② 학과가 통합되는 다음 학과의 재적생은 2017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

으로 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5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학과의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1. 국어국문학과 및 문예창작학과는 한국어문학과로
2. 유전공학과 및 분자생명공학과는 유전공학과로
3. 미술학과, 공예학과 및 섬유미술학과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로
4. 음악학과 및 실용음악학과는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로
5. 체육학과, 스포츠지도학과 및 생활체육학과는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로
6. 경찰경호학과 및 태권도학과는 예술체육대학 태권도경호학과로
7. 국제학부는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단과대학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은 2018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등으로 인해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인문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는 아동학과로
2.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4. 생명자원과학대학 유전공학과는 분자유전공학과로
5. 예술체육대학 태권도경호학과는 태권도학과로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칙의 개정) 2015년 3월 1일 개정된 「동아대학교 학칙」 부칙 제2조제2항제7호의 내용 중 국제학부는 국제학부 국제학전공으로 변경한다.

③(201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18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및 재입학 등으로 인해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국제학부 중국학전공은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으로
2. 국제학부 일본학전공은 중국·일본학부 일본학전공으로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18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학부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0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및 재입학 등으로 인해 2018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공과대학 인간환경융합공학부 건축공학과는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로
2. 공과대학 인간환경융합공학부 토목공학과는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로
3. 공과대학 인간환경융합공학부 환경공학과는 공과대학 환경공학과로
4. 공과대학 인간환경융합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는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로
5.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과는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로
6.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과는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로
7.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는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로
8. 공과대학 기계·산업경영공학부 기계공학과는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로
9. 공과대학 기계·산업경영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는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로
10. 공과대학 기계·산업경영공학부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는 공과대학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로
11. 공과대학 신소재화학공학부 화학공학과는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로
12. 공과대학 신소재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과는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로
13. 공과대학 신소재화학공학부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는 공과대학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로
14.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건축학과(5년제)로
15. 디자인환경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어패럴디자인전공 및 리테일머천다이징전공은 패션디자인학과로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부(과) 규정 변경사항 적용례) 제19조 전부(과) 가능 학년에 관한 개정 학칙은 「전부(과)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 및 제19조는 2019년 1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2019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1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경영대학 국제관광학과는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로
2.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간호학부 간호학과로

③(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2항에 의한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 학위명은 '글로벌비즈니스학사'를 '국제경영학사'로 변경하되 2018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④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인문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 프랑스문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2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학부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2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20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사회학부로
2.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사회학부로
3.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과는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로

③(공과대학 취득학점, 수료학점 및 졸업학점 변경사항 적용례) 제32조 취득학점, 제33조 수료

학점, 제34조 졸업학점에 관한 개정 학칙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학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202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소속 및 학과(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3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인문과학대학 사학과는 인문과학대학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으로
2. 인문과학대학 고고미술사학과는 인문과학대학 역사문화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으로
3.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는 국제대학 영미학과로
4. 인문과학대학 중국어학과는 국제대학 중국학과로
5.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는 자연과학대학 정보수학과로
6. 자연과학대학 신소재물리학과는 자연과학대학 반도체학과로
7.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는 자연과학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로
8. 사회과학대학 금융학과는 경영대학 금융학과로
9.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는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로
10. 공과대학 환경공학과는 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로
11.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는 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로
12.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AI공학부 컴퓨터공학과로
13.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국제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로
14.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은 국제대학 중국학과로
15. 중국·일본학부 일본학전공은 국제대학 일본학과로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학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202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가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4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22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5년제)는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또는 실내건축 디자인전공(4년제)으로
2. 디자인환경대학 도시계획공학과는 공과대학 도시공학과로
3.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는 예술체육대학 현대미술학과로
4.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성악·작곡전공 및 실용음악전공은 예술체육 대학 음악학과로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2항에 의한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학위명은 '관광 학사'를 '관광경영학사'로 변경하되, 2021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2항에 의한 디자인환경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학위 명은 '디자인학사'를 '디자인이학사'로 변경하되, 202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 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위명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5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3학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202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전공)가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5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23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사회과학대학대학 경찰·소방학과는 사회과학대학 경찰학과로
2. 공과대학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는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로
3. 예술체육대학 현대미술학과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로
4. 예술체육대학 공예학과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로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1)]

학부(과) 편성 및 입학정원(2021학년도~2024학년도)

캠퍼스	대학	학 부(과)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승학	인문 과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60	60	45	45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40	40	40	40
			고고미술사학전공	40	40	40	40
		한국어문학과		70	70	60	60
		교육학과		35	35	35	35
		아동학과		40	40	40	40
		소 계		285	285	260	260
	자연 과학	정보수학과		45	45	45	45
		반도체학과		45	45	45	45
		화학과		60	60	60	60
		바이오메디컬학과		45	45	45	45
		소 계		195	195	195	195
부민	사회 과학	정치·사회학부	정치외교학전공	40	40	40	40
			사회학전공	35	35	35	35
		행정학과		60	60	60	60
		사회복지학과		40	40	50	5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55	55	55	60
		경제학과		80	80	80	80
		경찰학과				70	70
		경찰·소방학과		60	70		
		소 계		370	380	390	395
	경영	경영학과		278	278	278	280
		관광경영학과		110	110	110	110
		국제무역학과		110	110	110	110
		경영정보학과		110	110	110	110
		금융학과		60	60	60	60
		융합경영학과		1	1	1	
		지식서비스경영학과		1	1	1	
		소 계		670	670	670	670

캠퍼스	대학	학 부(과)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승학	생명 자원 과학	분자유전공학과		60	55	55	55
		응용생물공학과		50	50	50	50
		식품생명공학과		50	50	50	50
		생명자원산업학과		40	40	40	40
		소 계		200	195	195	195
	공과	건축공학과		50	50	50	50
		도시공학과			50	50	50
		건설시스템공학과		75	75	75	75
		환경·에너지 공학부	환경안전전공	45	45	45	45
			미래에너지공학전공	45	45	45	45
		전기공학과		90	90	90	90
		전자공학과		130	130	130	130
		기계공학과		195	195	195	195
		산업경영공학과		75	75	75	75
		조선해양공학과				50	55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50	50		
		화학공학과		100	100	100	100
		신소재공학과		90	95	95	95
		소 계		945	1,000	1,000	1005

캠퍼스	대학	학 부(과)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승학	디자인 환경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55	55	55
			실내건축디자인전공 (4년제)				
		건축학과(5년제)		55			
		산업디자인 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65	65	65	65
			제품스페이스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과		50	50	50	50
		도시계획공학과		50			
		조경학과		45	45	45	45
		소 계		265	215	215	215
	예술 체육	미술학과	현대미술전공			80	80
			영상예술전공				
			목조형가구전공				
			도자예술전공				
		현대미술학과			50		
		미술학과		50			
		공예학과		50	40		
		음악학과			90	90	80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20			
			관현악전공	20			
			성악·작곡전공	20			
			실용음악전공	40			
		체육학과		104	104	104	104
		태권도학과		65	60	60	60
		소 계		369	344	334	324

캠퍼스	대학	학 부(과)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승학	건강 과학	식품영양학과	65	65	70	70
		의약생명공학과	55	55	55	55
		건강관리학과	50	50	60	60
		소 계	170	170	185	185
구덕	의과	의예과	49	49	49	49
		의학과	[49]	[49]	[49]	[49]
		소 계	49 [49]	49 [49]	49 [49]	49 [49]
부민	국제	글로벌비즈니스학과	80	80	70	70
		영미학과	80	80	80	70
		중국학과	60	60	60	60
		일본학과	50	50	50	50
		소 계	270	270	260	250
승학	컴퓨터 ·AI 공학부	컴퓨터공학과	70	80	80	80
		AI학과	60	60	80	80
		소 계	130	140	160	160
부민	석당인 재학부	공공정책학전공	40	40	40	40
		소 계	40	40	40	40
구덕	간호 학부	간호학과	100	105	105	115
		소 계	100	105	105	115
승학	합 계		2,559	2,544	2,544	2,539
구덕	합 계		149 [49]	154 [49]	154 [49]	164 [49]
부민	합 계		1,350	1,360	1,360	1,355
총 계			4,058 [49]	4,058 [49]	4,058 [49]	4,058 [49]

※ []안의 숫자는 의학과 정원으로 []밖의 숫자에 불포함

[별표 1(1-2)]

계약학부(과) 편성 및 입학정원(2020학년도~2023학년도)

캠퍼스	대학	학 부(과)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비고
승 학	공 과	산 업 공 학 과	26	20	20	20	3학년 편입
승 학	공 과	스마트생산융합 시스템 공 학 과			20	20	3학년 편입
승 학	공 과	스마트제조공학과				30	

[별표 1(1-3)]

정원의 전담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2021~2024학년도)

캠퍼스	대학	학 부(과)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부 민	경 영	융 합 경 영 학 과				0
부 민	경 영	지식서비스경영학과				0

- ※ 융합경영학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만 해당)의 외국인 유학생만을 모집함
- ※ 지식서비스경영학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의2호의 성인학습자 또는 제14호 다목의 재직자만을 모집함

[별표 2(2-1)]

학부(과)별 학위수여 종류

대 학	학 부(과) / 전 공		학 위 명
인문과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문 학 사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인문학사
		고고미술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사
	한국어문학과		문 학 사
	독어독문학과		문 학 사
	프랑스문화학과		문 학 사
	교육학과		교육학사
	아동학과		아동학사
자연과학	정보수학과		이 학 사
	반도체학과		이 학 사
	화학과		이 학 사
	바이오메디컬학과		이 학 사
사회과학	정치·사회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정치외교학사
		사회학전공	사회학사
	행정학과		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커뮤니케이션학사
	경제학과		경제학사
	경찰학과		경찰학사
경 영	경영학과		경영학사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사
	국제무역학과		무역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금융학과		경영학사
	융합경영학과		경영학사
	지식서비스경영학과		경영학사
생명자원 과학	분자유전공학과		이 학 사
	응용생물공학과		이 학 사
	식품생명공학과		이 학 사
	생명자원산업학과		이 학 사

대 학	학 부(과) / 전 공		학 위 명
공 과	건축공학과		공 학 사
	도시공학과		공 학 사
	건설시스템공학과		공 학 사
	환경·에너지공학부	환경안전전공	공 학 사
		미래에너지공학전공	공 학 사
	전기공학과		공 학 사
	전자공학과		공 학 사
	기계공학과		공 학 사
	산업경영공학과		공 학 사
	조선해양공학과		공 학 사
	화학공학과		공 학 사
	신소재공학과		공 학 사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		공 학 사
디자인환경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학사
		실내건축디자인전공(4년제)	디자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제품스페이스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패션디자인학과		디자인이학사
예술체육	미술학과	현대미술전공	미술학사
		영상예술전공	미술학사
		목조형가구전공	미술학사
		도자예술전공	미술학사
	공예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체육학과		체육학사
	태권도학과		체육학사
건강과학	식품영양학과		이 학 사
	의약생명공학과		이 학 사
	건강관리학과		이 학 사
의 과	의학과		의 학 사
국제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국제경영학사
	영미학과		국제학사
	중국학과		국제학사
	일본학과		국제학사
컴퓨터·AI공학부		컴퓨터공학과	공 학 사
		AI학과	공 학 사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전공	공공정책학사
간호학부		간호학과	간호학사

[별표 2(2-2)]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이수자 학과별 학위수여종류

대 학	학 과	학 위 명
공 과	건 설 시 스 템 공 학 과	건 설 시 스 템 공 학 사
	환 경 · 에 너 지 공 학 부 공 미 래 에 너 지 공 학 전 공	에 너 지 · 자 원 공 학 사
	전 자 공 학 과	전 자 공 학 사
	컴 퓨 터 공 학 과	컴 퓨 터 공 학 사
	건 축 공 학 과	건 축 공 학 사
	기 계 공 학 과	기 계 공 학 사
	산 업 경 영 공 학 과	산 업 경 영 공 학 사
	화 학 공 학 과	화 학 공 학 사
	신 소 재 공 학 과	신 소 재 공 학 사

[별표 2(2-3)]

연계·융합전공별 학위수여종류

주 관 대 학	주 관 학 과	전 공 명	학 위 명	비 고
인문과학	한국어문학과	인 문 융 합 콘 텐 츠 기 획	인 문 콘 텐 츠 학 사	연 계 전 공
인문과학	철학생명의료 윤 리 학 과	창 의 인 문 경 영	인 문 경 영 학 사	연 계 전 공
중국·일본 학 부	일 본 학 전 공	동 북 아 인 문 프 론 티 어	동 북 아 지 역 학 사	연 계 전 공
경 영	경 영 학 과	국 제 통 상	국 제 통 상 학 사	연 계 전 공
경 영	관광경영학과	항 공 비 즈 니 스	항 공 영 어 학 사	연 계 전 공
경 영	경영정보학과	스 마 트 물 류 무 역	무 역 경 영 학 사	융합전공 I
경 영	경영정보학과	스 마 트 헬 스 케 어	이 학 사	융합전공 I
디 자 인 환 경	건 축 학 과 (5 년 제)	실 내 공 간 디 자 인	디 자 인 학 사	융합전공 I
융 합		바이오헬스규제과학	이 학 사	융합전공 II
융 합		스 마 트 모 빌 리 티	공 학 사	융합전공 II
융 합		수 소 시 스 템	공 학 사	융합전공 II
융 합		A I · S W 융 합	AI·SW 융 합 전 공 공 학 사	융합전공 II

[별표 2(2-4)]

계약학부(과)별 학위수여종류

대 학	학 부(과)	전 공	학 위 명
공 과	산업공학과		공 학 사
공 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공 학 사
공 과	스마트제조공학과		공 학 사

[별표 2(2-5)]

교양 학사

대 학	전 공	학 위 명
기초교양	리버럴아츠	리버럴아츠학사

[제50조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학 위 증	
성 명	
____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 학부(과) (전공)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 박사 ○ ○ ○	
학위번호 : 동아대○○○○(학) ○○○○	

[제48조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____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 학부(과) (전공) 소정의 전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 박사 ○ ○ ○	